판 빠레이스 사회정의 및 착취 개념의 재구성*

곽노완**

〈차 례〉

1. 머리말: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가?
2. 판 빠레이스의 착취 및 정의 개념
   1) 사회정의의 개념 1: 실질적인 기회로서 기본소득의 최소극대화
   2) 사회정의의 개념 2: 착취의 개념과 외부자산에 대한 1/N의 권리
3. 결론: 판 빠레이스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의 재구성

【국문초록】

판 빠레이스는 로머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확립한 착취 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고용지대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자본과 부동산의 불로소득 및 자연자원수익 등을 기본소득의 새로운 재원의 범위로 편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에 의한 착취(고용지대) 개념이 포함된 기존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외부천부자산 내지 외부공유지만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빅데이터와 같은 개방된 공유지의 수익을 기본소득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7-361-AM0027).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으로 공유하는 전망을 자신의 착취 개념 및 사회정의론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을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공유지의 개념과 연계시켜 또다시 재구성한다면 호혜성 위배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이유로 한 기본소득 반대론을 넘어서서, 노동소득+기본소득(공유지배당)이 결합되어 노동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자유를 최소극대화 하는 새로운 공유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호혜성, 공정성, 사회정의, 착취, 기본소득, 공유지

1. 머리말: 기본소득은 공정성과 정의에 위배되는가?

2017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기본소득을 주요공약으로 제시하면서, 한국사회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인문사회 학계와 사회운동의 범위를 넘어서서 빠르게 공론화되었다. 기존의 선별적인 사회복지 패러다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조차 시행된 지 17년이 채 안 되는 한국사회에서, 선별복지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패러다임의 빠른 공론화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2010년 지자체 선거에서 현물기본소득의 한 형태인 보편적 무상급식이 급부상하고 2012년 대선 때 부문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는 박근혜전대통의 보편적인 노인기초연금 공약, 성남시의 보편적인 청년배당 실행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기본소득 논의의 급부상은 준비된 것이기도 하다. 지구적 차원에서 미국의 알래스카 주에서만 실시되던 기본소득이, 핀란드 전국, 네덜란드 우트레히트 시,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서의 실험으로 번질 만큼 이제 기본소득은 논의의 장 밖으로 나와 전세계적으로 현실의 일부가 되었다.

모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사회주의자들 내부에서도, 자유주의자들 내부에서도 강한 지지자와 강한 반대자를 동시에 갖고 있다. 이에 비해 생태계의 보존과 공유를 주장하는 녹색주의자들[1] 및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공유주의자들(commoner)[2] 사이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지지자들이 압도적인 편이다.

입장을 불문하고 철학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해 가장 큰 반대논거는, 기본소득이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착취이기에 호혜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캡틴 존 스미스(Captain John Smith)의 원칙은 신약성서에서도 소비에트에서도 지지된 바 있다(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In K. Widerquist et al. (Eds.),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2013, p. 123에서 재인용).

이 중에서 롤스(Rawls), 화이트(White), 앳킨슨(Atkinson), 판 돈젤라(Van Donselaar)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호혜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대표적인 논자들이다. 이들은 호혜성을 '공정성(fairness)'의 요건으로 보고 '기여-보상'이라는 호혜성의 연계가 결여된 기본소득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최소한 노동의지를 보이거나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지불되는 참여소득이다. 한국에

---

1) 한국의 대표적인 녹색주의자인 하승수는 생태재의 공유 원칙에 따라 탄소배당을 주장하고 있다(하승수,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p. 58).

2) 시장과 국가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영역으로서 공유(경제)의 확대재생산을 주장하는 공유주의자인 볼리어(Bollier)는 최근의 저서에서 알래스타 영구 기금을 예로 들어 기본소득을 공유의 원리에 일치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제시하고 있다(볼리어, 배수현 옮김, 『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p. 209). 또한 국가와 시장의 폐기를 주장하는 보다 급진적인 공유주의자인 네그리와 하트도 기본소득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네그리·하트, 정남영·윤영광 옮김, 『공통체』, 사월의책, 2014, p. 519).

서도 조남경이 화이트와 앳킨슨의 논지를 수용하여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로 압축되는 현대사회에서 지배적인 호혜성과 공정성 패러다임에 위배되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기초적 호혜성(baseline reciprocity)'을 충족하는 최소수준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최소 수준의 참여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조남경, 「기본소득 (전략)비판: 호혜성, 근로윤리, 그리고 권리와 통제」, 한국사회보장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p. 280).

이러한 '자유주의적 호혜성(liberal reciprocity)'과 공정성에 기초한 반대론에 대해 기본소득론자들의 반비판은 다양한 스펙트럼에 걸쳐 있다.

첫 번째 유형의 반비판으로는 기본소득을 호혜성과 무관한 공정성을 통해 정당화하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들 수 있다. '실질적 자유지상주의(real libertarianism)'의 창시자이자 현대 기본소득의 대표적인 주창자인 판 빠레이스(Van Parijs)는 호혜성과 공정성을 분리된 것으로 보고, 기본소득은 호혜성과 무관하게 공정성을 충족시키므로 사회정의에 합치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회정의를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반박한다. 기본소득은 남의 노동생산물에 대한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각자의 자기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은 토지 등 자연자원, 비자연적 외적 공유자산에서 유래하는 소득을 1/N로 배분하는 것이기에 착취를 가장 잘 제거하는 공정한 제도라는 것이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p. 99). 그에 따르면 오히려 자본의 불로소득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와 노동에 따른 분배는, 자본가들이 타인 노동생산물을 착취하거나 노동자들이 공유자산의 수익을 착취하는 것이므로 분배정의에 위배된다(Ibid, pp. 169-185). 곧 기본소득은 우리의 공동 유산에서 유래하는 선물에 대한 1/N의 권리로서 분배 정의의 원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다(Van Parijs, / 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p. 106). 더 나아가 판 빠레이스는 롤스와 같은 기본소득의 반대자들이 주장하는 노동조건부 소득보장은, '자유주의적 호혜성'이 기초하고 있는 '자유주의적 중립성(liberal neutrality)'을 위반하여 노동하는 삶이 노동하지 않는 삶에 비해 좋은 삶이라는 노동에 치우친 원리를 지지하기에 모순을 범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p. 90).

기본소득이 호혜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한 두 번째 반박은, '자유주의적 호혜성' 논자들이 호혜성을 부당하게 노동기여로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기본소득은 부분적으로 모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거나(권정임,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27권 4호, 2016, p. 46; 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샤플리 가치 관점에서」,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3권 4호, 2016, pp. 33-34) 또는 추가적인 노동소득을 보장하기에 노동소득이 있을 경우 지급을 중단하는 복지체계보다 사회적으로 더 많은 노동유인을 갖거나(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p. 131-132) 실업이 구조화된 사회에서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낳음으로써 넓은 의미의 호혜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권정임, 앞의 논문, pp. 59-60; Gorz,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0, pp. 119-20).

이 외에도 세 번째 반비판 유형으로, 보울스·긴티스(Bowles/Gintis)의 '강한 호혜성' 개념이나 화이트(White)의 '공정한 호혜성' 개념[3] 등의 '호혜성'에 따른 소득보장은 친밀한 대면적 공동체에

3) 보울스·긴티스의 '강한 호혜성'은 공동체적 규범을 중시하여 기여(선물)에 대한 1:1 보상은 아니더라도 포괄적 보상(답례)이 있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화이트의 '공정한 호혜성'도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이익의 수혜자는

서는 잘 작동하지만 익명성의 대규모 사회에 적용될 경우는 사회의 연대성을 증진시키기보다는 수급 자격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사회분열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비판도 있다(Van Parijs,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pp. 99-103; 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p. 124-133.).

또한 장기적으로 기본소득을 향해 가더라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자유주의적 호혜성' 패러다임에 입각한 참여소득과 전략적 타협을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 공존하면서 서서히 사회적인 지지를 확대해가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Fitzpatric, *Freedom and Secur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9, pp. 66-70; 이명현, 「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제26권 4호, 2010, pp. 449-451).

그 외에 네 번째 유형으로, 기본소득이 호혜성에 위배되긴 하지만 실용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선별적인 참가소득보다 우월하며 도입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Goodin, "Something for Nothing?", In J. Cohen et al. (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oston: Beacon Press, 2000, pp. 90-97).

이 중에서 필자는 첫 번째 반비판 유형을 따라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비판 중 두 번째의 논의와 다른 방향의 논의들은 이러한 논증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될 것이다.

1:1 보상은 아니더라도 이에 합당한 수준에서 포괄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는 원리이다(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p. 124-133. 참조). 이들의 논의와 유사하게, 공동체의 선물경제는 쌍무적인 호혜성(bilateral reciprocity)은 아니지만 선물과 채무의 막연한 연결에 기초한 관대하고 '근본적 호혜성(radical reciprocity)'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Sudararajan, *The Sharing Economy*, Cambridge-MA: The MIT Press. 2016, pp. 36-37).

2. 판 빠레이스의 착취 및 정의 개념

판 빠레이스는 착취와 호혜성을 대립적으로 보지 않는다. 보다 정확히 말하면 호혜성이 공정성과 정의의 핵심적인 요건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유주의적 호혜성' 개념이 공정성에 비해 지나치게 협소한 개념이라서 사회정의 개념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반면에 그에게 착취 개념은 정의론의 핵심요건을 이룬다. 호혜성을 충족하지 않는 기본소득이 사회정의의 핵심요건이 된다는 것은, 사회에 대한 기여가 없거나 적은 수혜자라도 기본소득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는 걸 뜻한다. 곧 기본소득은 노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지 않더라도 공유지(수익)에 대한 1/N 권리로서 타인노동이나 공유지의 착취가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착취를 정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 개념은 2단계로 정식화된다. 1단계는 사회정의를 실질적인 자유와 연계하여 정의하는 단계이고, 2단계는 실질적인 자유의 원천과 근거를 정당화하는 단계이다.

1) 사회정의의 개념 1: 실질적인 기회로서 기본소득의 최소극대화

우선 1단계로 판 빠레이스는, "사회정의란 각자가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삶을 실현할 실질적인 자유의 평등한 분배"라고 정의한다(액커만 · 알스톳 · 판 빠레이스,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히적 지분급여』, 나눔의 집, 2010, p. 39). 그에게 **정의로운 사회는 자유로운 사회**와 동의어이고, 실질적인 자유는 실질적인 기회와 동의어이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1995, pp. 25-27). 곧 그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정의의 요건으로 본다. 따라서 노력에 따른 결과의 불평등

은 기본소득의 사회정의론에 위배되지 않는다(Ibid, p. 135). 여기서 실질적 자유 내지 기회란 단순히 형식적인 권리만이 아니라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는 수단(means)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Ibid, p. 4, 40).[4] 그런데 이 실질적 자유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는 잘 집행되는 권리구조가 갖춰져야 한다(안전), 둘째로 자기신체에 대한 처분권(자기소유권), 셋째 각자 자신이 원할 수도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에 대해 가능한 한 최대의 기회를 갖는 것(기회의 최소극대화). 여기서 셋째 조건은 롤스의 차등의 원칙을 원용한 것이다. 곧 최소수혜자의 실질적인 자유 내지 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한다. 물론 이처럼 최소수혜자의 실질적 자유 극대화는 지속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판 빠레이스는 이의 구체적인 형태로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제시한다(Ibid, p. 39).

그런데 여기서 최소수혜자는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의 최소수혜자와 다르다. 롤스에게 최소수혜자는 미숙련 저소득 노동자들이며 노동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다(롤스,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3, pp. 147-8). 이에 비해 판 빠레이스에게서 최소수혜자는 노동의지와 상관없이 소득이 전혀 없는 무소득자들이다(Van Parijs,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Marxism recycl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pp. 166-171). 롤스는 1974년부

4) 이처럼 좋은 삶에 대한 비전을 타인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자에게 위탁한다는 점에서 판 빠레이스는 '자유주의적 중립성'을 지키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실질적 자유지상주의(real libertarianism)를 토지 및 자연자원의 평등한 분배 및 이의 거래제한을 주장하는 '좌파지상주의'의 좌파라고 특징짓고 있다(Van Parijs. Ph., *Real Freedom for All*, p. 27). 기본소득의 지지자들은 대체로 좋은 삶에 대한 관념을 사회적으로 규정하는 공동체주의의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체주의 전통에서도 '비강압적 간섭주의' 입장에서 좋은 삶의 기본요건들을 패키지로 구성하고 여기에 기본소득을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다. 단, 이들은 정기적·주기적인 지급보다는 일시불로 목돈을 지급하는 자본장려금을 선호한다(로버트 스키델스키·에드워드 스키델스키, 김병화 옮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2013, pp. 319-326).

터 사회경제적 부의 목록에 레저를 포함시키면서 말리부에서 서핑만 하는 자들은 이미 노동자들의 1일 근무시간에서 나오는 소득에 갈음하여 레저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부를 누리므로 더 이상 실질소득을 얻게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면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에 반대하고 노동조건부적인 마이너스 소득세 정책을 지지한다(Rawls, Kell y(Eds.) *Justice as Fairness*, Cambridge-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 179; 롤스,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2013, p. 371). 이에 대해 판 빠레이스는 1995년에는 롤스가 노동에 치우쳐서 '자유주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모순을 범한다고 지적하였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1995, pp. 131-2). 그러나 최근에는 차등의 원칙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에 기초한 원칙이므로 오히려 레저를 사회경제적인 수혜목록에 포함시킬 때, 말리부의 서퍼에게도 기본소득이 주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된다고 분석한다. 왜냐하면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원칙에 따라 당장의 소득이나 사회경제적 부가 아니라 직업군에 따른 일생의 평균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보전을 받는 최소수혜자가 결정되며 레저와 소득이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기에 레저의 상대적 가치를 낮게 평가하면 롤스의 차등의 원칙에서도 말리부의 서퍼에게 다소의 기본소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Van Parijs,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revised and unpublished. 2010, pp. 6-7, 19).

2) 사회정의의 개념 2: 착취의 개념과 외부자산에 대한 1/N의 권리

판 빠레이스 사회정의 개념의 2번째 단계는 실질적 자유 내지 기회의 원천을 확대하고 정당화하는 단계이다. 판 빠레이스는 실질적 기회의 원천인 기본소득이 사회의 총 외부천부자산(external

asset, external endowments)에 대한 1/N의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이 토지와 같은 자신의 외부천부자산을 포기하게 되면 그는 이 토지의 가치에 해당하는 무조건적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p. 99). 그런데 판 빠레이스는 이 사회의 외부 자산 내지 천부(endowments)는 토지 등 자연자원만이 아니라 자기 노동생산물이 아닌 모든 외부자산을 아우른다고 본다. 그래야만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의 원천이 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외부자산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소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진보하며 순 축적이 이루어져야 한다. 곧 이 외부자산에 대한 세대 간 공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Ibid, pp. 39-40). 이제 문제는 이 기본소득의 원천인 외부 자산 내지 천부의 범위를 밝히는 것이다. 각자의 자기노동생산물이 아닌 이 외부자산은 이미 누군가에 의해 전유되고 있다. 판 빠레이스는 이를 착취(exploitation)라고 보고 이 착취된 외부자산의 상당부분을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하자고 한다. 이러한 착취의 환수가 바로 최소수혜자의 실질적 기회를 최소극대화하라는 사회정의의 원천과 근거가 된다. 이 실질적 기회의 최소극대화를 위해 그는 우선 착취의 외연을 확대한다.

그는 남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unfair) 이익을 취하는 것을 착취라고 하는 데서 출발한다(Ibid, pp. 137-9). 이는 마르크스의 착취 개념과 일치한다. 물론 판 빠레이스에게 기본소득은 남의 노동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의 외부자산이나 착취의 환수를 재원으로 하므로 공정하며 따라서 착취가 아니다.

그는 첫 번째 로 존 로크의 착취개념을 검토한다. 로크의 착취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의 노동기여 없이 생산된 것을 전유하는 경우를 뜻한다(Ibid, pp. 145-146). 이러한 착취 개념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자기 노동기여의 생산물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착취

에 해당한다. 실제로 판 돈젤라는[5] 로크적인 입장에서 기본소득을 착취라고 비판하고 있다(Van Donselaar,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Basic Inco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57-63, 170-4). 이러한 로크의 착취개념은 얼핏 보아 마르크스의 착취개념과 유사해 보이지만 마르크스가 부의 원천을 노동+자연이라고 보는 데 반해(Marx, "Kritik der Gothaer Programms", In *Marx Engels Werke 19*, Berlin: Dietz Verlag, 1982, p. 15), 로크는 노동만을 부의 원천이라고 보는 데서 차이가 난다.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노동만을 부의 원천으로 보는 착취개념을 마르크스가 아니라 로크에게 귀속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로크의 착취개념은, 낮은 임금을 주면서도 이윤을 내지 못하는 자회사로부터 중간재를 저가로 공급받아 초과이윤을 내는 모회사의 잉여생산물의 계산 문제, 같은 노동투하에 대해 생산수단의 차이에 따른 생산량의 차이를 합리화 하는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pp. 148-9).

다음으로 그는 루터의 착취개념을 고찰한다. 루터의 착취는 누군가가 소득으로 전유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가치 내지 더 많이

---

5) 판 돈젤라가 로크의 착취개념을 그대로 차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로크의 착취개념을 다소 변형한 가우티어(Gauthier)의 착취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남이 없거나 그가 나와 관계가 없을 때 나의 상황이 개선되고 그의 상황이 악화된다면 나는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Van Donselaar,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p. 4). 만약 게으른 사람이 없다면, 일중독자는 생산자원을 그와 나누거나 생산물의 일부를 그에게 새산자원을 임차한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혼자서 생산물을 전유할 수 있기에 이익이 된다. 따라서 게으른 사람의 기본소득은 열심히 노동하는 사람에 대한 착취에 해당한다. 판 돈젤라에 대한 판 빠레이스 학파의 반비판에 대해서는 와이더퀴스트(Widerquist, "Does She Exploit or Doesn't She?", In K. Widerquist et al. (Eds.),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2005, pp. 138-149) 참조. 또 판 돈젤라에 대한 마르크스적인 비판에 대해서는 곽노완(「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8권 2호, 2011, pp, 40-68) 참조.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만큼 기여한 경우에 발생한다. 그러나 노동가치의 등가교환 내지 부등가교환에 따라 착취를 정의하는 이 방식은 몇 가지 문제를 내포한다. 첫째로 결합생산물(joint products)의 경우 노동가치를 결합생산물에 분할할 때 자의성에 의존하게 된다. 둘째로 예를 들면 직업패턴이 독특한 감독노동의 생산성처럼 총노동의 생산성과 비교가 힘든 경우 있다. 셋째로 단순 미숙련 노동이 노동가치의 준거가 되는데, 미숙련 노동조차 이질적이라서 각각의 경우 착취량 계산이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Ibid, pp. 154-155).

또한 판 빠레이스는 마르크스가 코뮌주의의 낮은 단계에 대해 제시한 '각자에게 노동(labour, 원어는 Arbeitslieferung)에 따른'[6] 분배원칙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한 사회에 나랑 너만 있고 각자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똑같이 열심히 일했으나 네가 힘이 좋아서 건 트랙터를 사용해서건 나보다 4배의 양배추를 경작한다면, 우리는 서로 관계가 없고 네가 나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라도 이 원칙에 따를 때 나는 불공정한(unfair) 대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심지어 내가 너의 양배추 중에서 1/4을 받음으로써 너의 노동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경우에조차 나는 불공정한 대가를 받는 셈이다. 이 경우 로크의 착취개념에 따를 때 나는 너를 착취하는 것이고 루터의 착취개념에서도 이 경우는 노동가치의 부등가교환이므로 내가 너를 착취하는 것이지만, 이 새로운 원칙에서는 내가 너를 착취하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불공정하게 적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

6) 판 빠레이스가 제시한 대로 마르크스는 코뮌주의의 저차 국면의 분배원칙으로 노동(Arbeitslieferungen)에 따른 분배를 제시한다(Marx, "Kritik der Gothaer Programms", p. 20 참조). 그리고 코뮌주의 고차국면의 생산 및 분배 원칙으로는 '각자 능력(Fähigkeiten)에 따라, 각자에게 그들의 필요(Bedürfnissen)에 따라!'를 제시한다(Ibid).

다.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의 길이(length, Ausdehnung)와 강도(intensity, Intensität)**에서의 차이보다 나에게 최종적으로 돌아오는 몫이 크게 적으면 비록 내가 너로부터 추가적인 보상을 받더라도 불공정하게 적은 대가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Ibid, pp. 160-161; Marx, "Kritik der Gothaer Programms", p. 21).

그런데 이러한 노동의 길이와 강도는 노동기여를 측정하는 공정한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예를 들어 안전하고 쉽고 즐거운 일과 위험하고 수고스럽고 지루한 일은 등가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요소까지 감안할 때 노동의 길이와 강도보다는 **고통스러움(disutility, 비효용)**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노동을 평가하고 보상하는 것이 더 적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요인을 감안할 때, 판 빠레이스는 '각자에게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각자에게 생산적인 노력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으로 일반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소득과 생산적인 노력을 연계시키는 분배원칙은 공정한 분배의 한 요소가 됨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처럼 일반화된 분배 원칙이나 노동의 고통스러움 수준도 객관적인 분배기준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pp. 162-8). 게다가 생산성이 다른 토지나 생산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소득과 생산적인 노력의 비례성 원칙은 착취나 정의로운 분배의 기준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Ibid, p. 168).

이상의 분배정의 내지 착취의 기준을 검토한 후에 판 빠레이스는 로머(Roemer)의 착취개념을 검토한다. 로머는 게임이론 내지 재산관계 접근법을 통해 착취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착취개념에 대한 대개의 접근법이 착취의 원천을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생산적 자산의 분배에 있다고 본다. 로머는 착취의 외연을 4가지 유형으로 확장한다. 자본주의적 착취, 봉건적인 착취, 사회주의적 착취, 필요의 착취가 그것이다. 판 빠레이스는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합

당한 기본소득의 원천을 정식화하기 위해 로머의 착취개념을 기각하기보다는 수정보완하고 확장한다.

로머의 자본주의적 착취는, **한 연합체가 생산수단에 대한 1인당 지분의 연합체 몫을 갖고 철수하여 적합하게 생산을 조직했을 때 사정이 나아지고(나빠지고) 남은 구성원들의 사정은 나빠지는(좋아지는) 경우에 발생한다. 철수한 연합체가 철수 후 사정이 좋아졌다면 그간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당했다는 것이고, 사정이 나빠졌다면 그간 자본주의적 착취자였던 것이다.** 이는 자본가가 생산수단에 대한 1/N의 지분만을 갖고 철수할 경우 손해를 보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Ibid, p. 170에서 재인용).

그러나 규모의 경제를 고려하면 자본이 일군의 노동자들과 함께 철수한 이후에 남은 노동자들의 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정의에 따를 때, 남은 노동자들이 착취자라는 모순된 결론이 도출된다. 뿐만 아니라 상보성의 원리를 감안한다면 특별한 기술을 가진 노동자그룹이 철수해도 비슷한 문제가 생긴다. 이를 감안할 때 로머의 정식은 수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판 빠레이스는 로머의 철수를 기준으로 한 착취개념을 균등분배를 기준으로 한 착취개념으로 수정한다. 곧, **나머지 조건이 불변인 상태에서 사회의 생산수단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A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그는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를 당해 왔던 것이고 생산수단의 평등분배 이후 사정이 나빠진다면 그는 자본주의적으로 착취를 해왔다는 것이다**(Ibid, pp. 169-70). 그러나 이러한 수정된 착취개념도 효율성효과, 가격효과 등에 따른 문제점을 내포한다. 생산수단의 불평등한 분배가, 자본축적의 인센티브로 작동하는 효율성효과가 나타나면 이 정식에 따라 노동자가 착취자로 분류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 가격효과로 인해 생산수단의 균등분배가 누구에게는 소득을 올려주고 누구에게는 소득을 감소시켜 상대가격 변화를 야기함으로써 역으로 균등분배의 수혜자가 손해를 보고 희생자는 이

익을 보는 모순된 상황 등이 전개될 수도 있다(Ibid, p. 172).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판 빠레이스는 로머의 자본주의적 착취개념을 한번 더 수정한다. 이 수정된 정의에 따르면 **자본주의적 착취**는, **다른 사정이 불변이며 효율성효과와 가격효과를 사상할 때 사회의 생산수단이 평등하게 분배되었을 때 A의 사정은 좋아지고 타인의 사정은 나빠지는 경우이다**(Ibid, p. 173). 곧 A는 생산수단의 균등분배 이전에는 사정이 나빴다는 것이므로 착취당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판 빠레이스는 로머의 봉건적인 착취개념도 유사하게 수정 보완하여 재정의 한다. 이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불변이며 효율성효과와 가격효과를 사상할 때 모두가 완전한 형식적 자유를 누리게 되어 A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그는 봉건적으로 착취당하고 있었던 것이다**(Ibid, p. 174).

또한 판 빠레이스는 로머의 사회주의적 착취개념 및 필요의 착취개념도 수정 보완하여 새롭게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다른 사정이 불변이며 효율성효과와 가격효과를 사상할 때 모든 자산 곧 양도가능한 자산과 양도 불가능한 기술들이 평등하게 분배됨으로써 A의 사정이 좋아진다면 그는 사회주의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Ibid).**

그리고 **필요의 착취**는, **다른 사정이 불변이며 효율성효과와 가격효과를 사상할 때 필요가 평등하게 분배된 결과 A의 사정의 좋아지는 경우이다(Ibid).** 곧 A는 이전에 필요의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필요는 건강을 포함한다(Ibid, p. 175). 곧 로머와 판 빠레이스는 양도 불가능한 건강도 가상적인 공유자산으로 보는 것이다. 곧 건강한 사람은 장애인에 비해 자신의 노력이 없이도 건강이란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건강을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 빠레이스는 이처럼 신체에 결부된 양도 불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로머 이상으로 확대하여 젠더, 인종, 시민권으로까지 확

대한다(Ibid, pp. 176-7). 남성, 백인, 선진국민은 자신의 노력과 무관하게 많은 내부천부자산을 갖게 되어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착취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잘생긴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 등으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양도 불가능한 천부자산의 착취를 환수하여 피착취자와 공유토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 따라서 판 빠레이스는 액커만의 '비우월적 다양성(undominated diversity)'의 원리를 수정하여 대응한다. 곧 모두가 A의 양도 불가능한 천부자산 총합을 B의 천부자산 총합보다 선호하는 경우에만 A가 우월하다고 간주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애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괄적인 천부에 있어서 비우월적으로 다양하여 타고난 천부자산의 착취-피착취의 관계에 놓이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곧 장애인처럼 누가 보아도 타고난 천부자산이 부족한 경우에만 피착취자로 간주되어 피착취 부분에 해당하는 선별적인 소득보장을 받게 된다(Ibid, p. 60, 73-7, 184). 이렇듯 양도불가능한 내부천부자산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착취자도 피착취자도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반해 판 빠레이스는 외부천부자산에 대해서는 차이나는 각각의 경우를 착취로 간주하여 매 경우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풀로 보낼 것을 제안하다. 그런데 나머지 착취 곧 각자 노력의 산물이 아닌 외부천부자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위해 모두가 공유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직접적으로 환수하기보다는 그러한 외부자산이 낳는 소득(특히 고용지대 및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환수할 것을 제안한다(Ibid, pp. 91-2, 183). 그러나 모든 착취를 다 환수하는 것은 경제활동의 유인을 감소시켜 파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판 빠레이스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하여 착취에서 유래하는 모든 소득이 아니라 일부를 환수하기 위해 일정세율

로 과세해야 한다고 본다(Ibid, pp. 39-40; 101, 118-9). 이렇게 되면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판 빠레이스는 사회적으로 희소하고 선망 받는 일자리가 낳는 고용지대를 이자 및 배당 등의 자본소득과 나란히 기본소득의 주요 재원으로 하자고 주장한다(Ibid, p. 109, 119). 그는 일자리가 시장청산가격을 넘어서서 지대를 낳는 이유를 효율성임금론, 내부자-외부자이론 등으로 설명한다(Ibid, p. 113). 곧 자본은 시장청산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한 대가로 이직률 감소, 노동 강도 강화, 노동자들의 충성도제고 등을 통해 오히려 이윤을 증대하는 전략을 취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은 시장청산가격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바로 이처럼 시장청산가격을 초과하는 임금이 바로 고용지대이다. 이를 통해 상당수 정규직 노동자는 불공정한 고용지대를 착취하는 사람으로 분류되고 이 고용지대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되어야 할 대산으로 간주된다.

판 빠레이스는 이처럼 자신의 노동에서 유래하지 않은 외부천부자산을 모두 착취로 간주하고, 이를 실질적 기회를 최소극대화하기 위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하는 것이 사회정의의 2단계에 해당한다.

이상의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과 착취론에서 2가지 문제를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각자 노동의 산물이 아닌 외부천부자산에 대해 공유권을 인정하더라도 이러한 공유권은 사용권과 처분권에 해당하지만 수익권까지 보장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의문이다. 곧 외부자산에 대한 공유권은 기본소득의 필요조건에 불과하고 충분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문제제기이다(권정임,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제27권 4호, 2016, p. 63). 이는 호혜성 문제와도 연동되어 있다.

둘째는 고용지대를 인정하더라도 그 고용지대가 판 빠레이스가

설정하는 것만큼 광범한가라는 의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고용지대보다는 금융·부동산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가 기본소득의 재원을 정당하게 확보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론을 비판적으로 재구성할 결론에서 살펴보자.

3. 결론: 판 빠레이스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의 재구성

외부자산에 대한 1/N의 공유권으로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가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는 첫 번째 의문에 대해서, 판 빠레이스의 답변은 사회의 모든 성원이 직접적인 개인노동의 생산물이 아닌 토지와 생산수단 등 외부천부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용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따라서 그 외부천부자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Ibid, 51-54, 99-100). 앞에서 보았듯이 판 빠레이스는 이러한 외부자산에 희소한 일자리를 포함한다. 이처럼 비배제적이며 경합적인 공유지로서 토지, 자본 및 일자리 등 외부천부자산은 희소성으로 인해 모두가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으며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특정한 사용자에게 판매되거나 임대될 수밖에 없다. 대신 나머지 사람들은 공유지에 대한 사용기회를 양도한 대가로 기본소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공유지의 사용자도 1/N의 공유권을 가지므로 기본소득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면 이 공유지는 누구에게 할당되어야 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판 빠레이스는 모두의 공유지인 외부자산의 가격이 선망부재(envy-free)의 효율적인 경쟁가격으로 정해져야 하며 이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매(auction)를 제시한다(Ibid, pp. 53-4). 이는 현대사회에서 실제로

정부나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방법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지에서는 이처럼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생긴 수익을 토목건축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성원 모두가 아니라 특권층과 자본 및 토지소유자들에게만 횡재를 안겨주는 '공유지의 역설'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한다.[7] 이는 기본소득과 정반대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이처럼 모두가 1/N의 처분권/사용권/수익권을 갖는 공유지(共有地)와 달리, 국공유지(國公有地)는 특권층과 자본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무상으로 사유화되기 십상이다(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pp. 82-95). 그리고 현실적으로 선망 받은 일자리는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경매에 따라 할당될 수 없다. 따라서 판 빠레이스는 차선책으로 선망받는 일자리가 낳는 고용지대를 포함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적정세율로 과세할 것을 제안한다(Van Parijs. Ph., *Real Freedom for All*, pp. 99-113). 이처럼 경합적인 공유지의 수익은 그 공유지를 특정 사용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함으로써 사용기회를 상실한 모두에게 기본소득으로 공유될 때만 착취에서 벗어나 공정하게 사용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경합적 공유지의 사용자는 판 빠레이스적인 의미에서 모두를 착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판 빠레이스의 입장에서 경합적인 공유지의 수익으로부터 각자에게 노동유무와 상관없이 1/N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직접적으로 호혜성을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라도[8], 노동자에 대한 비노동자의 착취가 아니라

---

7) '공유지의 역설'은 지하철역이나 공원과 같은 새로운 공유지의 수익이 공동체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돌아가지 않고 인접한 사유지의 시장가치를 상승시킴으로써 자산이 많은 사람에게 집중되는 반면, 새로운 공유지로 인해 무산자는 더 많은 지대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뜻한다(곽노완, 「도시부동산수익의 공유와 기본소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도시인문학연구』 9-1, 2017, p. 211).

8) 권정임은 자발적인 실업자의 기본소득도 호혜적이라고 본다. 그는 롤스에

공유지에 대한 모두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권리이며 거꾸로 이 공유지의 수익에 대한 권리를 특권층이나 노동자로 한정하는 것은 모두에 대한 특권층 내지 노동자들의 착취에 해당한다.

이제 두 번째 의문에 대해서 살펴보자. 판 빠레이스의 고용지대론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중심 패러다임에 입각한 호혜성에 어긋난다고 비판받아 왔다. 고용지대에 대한 비판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노동중심 사회 패더라임을 공유하는 현실사회주의와 사민주의, 자유주의 등으로부터 다양하고 거세게 제기되어 왔던 것이다(이에 대한 반비판은 Widerquist,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pp. 123-133 참조).

판 빠레이스는 효율성임금, 내부자-외부자이론을 수용하여 정규직 일자리에서 시장청산임금보다 높은 초과임금 곧 고용지대가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완전고용상태에서도 고용지대는 체계적으로 발생한다고 본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1995, p. 113). 이는 최근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양극화를 볼 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는 시장청산임금이 착취를 포함하지 않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임금이며 그 이상의 임금을 받는 대다수 정규직 노동자는 자본가와 이윤을 나누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곧 오늘날 비정규직의 임금은 공정한 임금이며, 정

따라 생산수단 등 외부자산의 불평등한 사용과 독점이 최소수혜자의 몫을 극대화하는 지속가능한 효율성을 수반한다면 이는 사회에 기여한 셈이며 따라서 차등에 원칙에 따라 정당화될 수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권정임,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2016, pp. 47-53). 이러한 전제 아래, 공유지에 대한 자발적인 실업자가 공유지의 사용권과 처분권을 가장 생산적인 주체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것도 노동의무에 기초하는 호혜성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사용권의 임대를 통해 임대인/임자인 상호간에 이득을 보며 타인의 취업기회를 증대시키기에 호혜적이라고 본다(앞의 논문, pp. 57-60). 나아가 "같은 것으로 응답하려는 성향"(롤스, 『정의론』, p. 634)을 '호혜성'이 기초하는 자연적 태도 내지 도덕심리학적 사실로 보는 롤스의 따를 때에도, 사회에 대한 애착을 강화할 수 있는 기본소득이 호혜적인 측면이 있다고 제시한다(권정임, 앞의 논문, pp. 60-61).

규직의 임금은 이윤의 일부인 고용지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주요재원을 소득세인상을 통해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지대를 환수하여 마련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판 빠레이스는 상속세, 증여세, 토지세, 기타 공유 외부자산에 대한 과세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없다고 본다(Ibid, p. 102). 따라서 그는 고용지대가 기본소득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Ibid, p. 116). 곧 그의 고용지대론은 기본소득의 경제적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소득세율을 높여 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지대를 환수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 및 그의 가족도 노동소득 외에 기본소득을 추가로 받게 되어 대체적으로 이익을 볼 수 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 빠레이스도 인정하듯이 이는 노조의 격렬한 반대를 야기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그들이 보기에 고용지대 환수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여 노동자를 착취하여 게으름뱅이를 살리는 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Van Parijs/Vanderborght,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05, p. 91, 100; Füllsack, *Leben ohne zu arbeiten? – Zur Sozialtheorie des Grundeinkommens*, Berlin: Avinus Verlag, 2002, p. 169). 곧 고용지대를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 모델은 노조의 반대를 초래해 정치적 실현가능성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

9) 미국에서 개인 소득세를 단일세율인 35.8%로 인상하여 기본소득을 지급했을 때 60%의 가구가 순이익을 보고 40%의 가구가 순손실을 본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다(Howard, "Basic Income, Liberal Neutirality, Socialism, and Work", In K. Widerquist et al. (Eds.),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2005, p. 130에서 재인용). 물론 누진세율을 적용하거나 소득세 외에 공유지의 수익이나 법인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에 합치면 순이익을 보는 가구가 크게 늘어나게 된다.

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대를 환수하기 위해 임금에 중과세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최대한의 기본소득'을 주창한 판 빠레이스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노동유인을 크게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 총생산 및 기본소득재원의 감퇴를 초래할 수도 있다(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pp. 90-91). 따라서 판 빠레이스의 고용지대론은 자기모순적인 측면이 있다. 더욱이 판 빠레이스는 금융과 부동산에 대한 자본주의적 투기소득을 간과하고 있다. 나라마다 그리고 해마다 다르겠지만 한국에서 증권 및 파생상품 투기소득은 35% 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2010, p. 91에서 재인용). 게다가 2015년에 한국에서 이자를 공제한 순임대소득과 매매차익 곧 토지 불로소득+투기소득은 356조 원으로 추산되기도 한다(남기업, 「그 많은 토지 불로소득은 누가 가져갔나」, 『오마이뉴스』, 2017. 4. 20.). 이는 2015년 가계 순가처분소득의 35% 수준에 달하는 금액이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현대자본주의에서 금융자산에 대한 투기가 일반화되고 노동소득의 상당부분이 임대소득으로 지출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금융 및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판 빠레이스가 이러한 추세에 착목했다면, 고용지대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기본소득모델이 아니라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요재원으로 하는 다른 기본소득모델을 제시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에 집중과세하면 고용지대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충분한 재원도 확보하고 노동자들의 반대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판 빠레이스도 이러한 비판과 그간의 실험결과를 반영하여 최근에는 고용지대에 대한 과세율을 낮추고, 개인 소득세를 대체하거나 보충할 대안적 재원을 탐색한다(Van Parijs/Vanderborght,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p. 147). 그 중에 하나가 노동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는 a)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으로 구성되는 총소득에 대한 누진세, b) 가파른 누진부유세, c) 법인세인상, d) 상속세 확대[10] 등을 제시하고 있다(Ibid, pp. 147-8). 또한 그는 로머, 랑에(Lange), 융커(Yunker) 등에 따라 기업 및 노동시장의 경쟁과 생산수단의 집단소유가 결합된 시장사회주의 기업의 수익에서 직접 사회수당을 지급하는 모델도 개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Ibid, pp. 148-9). 더 나아가 그는 조지(George)스트의 토지세, 자원수익배당과 소비세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Ibid, 149-158). 이를 통해 자신의 고용지대론을 상당부분 유보하면서, 노동유인을 가능한 한 감퇴시키지 않을 기본소득 재원의 풀을 개념적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판 빠레이스는 로머에 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통해 확립한 착취개념의 외연을 확장하면서 최근에는 고용지대의 외연을 축소시키고 자본과 부동산의 불로소득 및 자연자원수익 등을 기본소득의 새로운 재원의 범위로 편입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에 의한 착취(고용지대)라는 개념이 포함된 기존의 사회정의론과 기본소득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한다. 이러한 재구성을 통해 압도적인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기본소득모델이 제시될 것이므로, 기본소득의 경제적/정치적 실현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외부천부자산 내지 외부공유지만이 아니라, 앞에서 제시한 대로 인터넷으로 연결된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산하는 빅데이터와 같은 개방된 공유지의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공유하는 전망을 자신의 착취 개념 및 사회정의론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의 직접적인 노동 생산

10) 상속세 확대는 액커만(Ackerman), 알스톳(Alstott), 앳킨슨(Atkinson) 등 사회적 지분급여론자들이 보편적인 기본자산의 재원으로 중시하는 항목이다(Van Parijs/Vanderborght, Ibid, p. 148).

물이 아닌 모두의 공유지인 외부천부자산이 토지, 생산수단, 일자리처럼 희소하고 경합적인 경우도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모두가 생산한 정보/지식/빅데이터 등 비경합적인 공유지도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생산된 비경합적인 공유지는 구글, 유튜브, 네이버 등에서 보듯이 사용자들에게 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영상을 탑재한 생산자들이나 파워블러거에게 마이크로 페이먼트(micro payment) 형태로 수익의 일부를 나눠주지만 미미할 뿐이고 모두의 노력과 사용을 통해 얻는 막대한 광고수익을 거의 사유화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수익의 많은 부분이 공유지의 수익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판 빠레이스의 용어법에 따르면, 이는 모두의 노력으로 생산된 공유지를 IT업체가 착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비배제적이며 경합적인 공유지에서 발생하는 수익 내지 이에 대한 과세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보하자는 판 빠레이스의 제안은 비배제적이며 비경합적인 새로운 인터넷 공유지의 수익 및 이에 대한 과세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식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샤플리 가치 관점에서」, pp. 18-22 참조). 곧 공유지는 나의 노동과 무관하게 자연적으로 또는 사회역사적으로 전승된 자산에 한정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나를 포함한 모두의 노동내지 노력으로 새롭게 확대 재생산되는 자산도 있다. 이처럼 나를 포함한 모두의 노력으로 생산된 공유지가 급속히 확장되고 인터넷 포탈사이트 업체에 의해 착취되는 상황에서 이를 환수하여 기본소득의 재원을 확대하는 것은 공유지 수익 내지 착취의 환수를 통해 실질적 자유 내지 기회를 최소극대화 한다는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공정하고 정의로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비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두가 생산한 비경합적 인터넷 공유지의 수익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기본소득에 대한 최대의 반대 논거인 게으름쟁이의 무임승차와 호혜성

위배 문제에서 자유롭다. 게으름쟁이도 노동자도 그리고 어린이들도 모두가 인터넷공유지의 공동생산자이기 때문이다.[11]

이처럼 판 빠레이스의 사회정의론을 모두가 함께 생산하는 공유지의 개념과 연계시킨다면 호혜성 위배나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이유로 한 기본소득 반대론을 넘어서서, 노동소득+기본소득(공유지 배당)이 결합되어 노동유인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자유를 최소극대화하는 새로운 공유사회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논문

강남훈,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의 권리 - 마르크스의 지대이론과 샤플리 가치 관점에서」,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13-4, 2016, pp. 12-34.

곽노완, 「글로컬아고라와 기본소득」,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7-1, 2010, pp. 75-102.

_____,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경상대사회과학연구원, 『마르크스주의 연구』 8-2, 2011, pp. 40-68.

_____, 「도시부동산수익의 공유와 기본소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

11) 이러한 사회성원 모두가 공동 생산한 인터넷공유지와는 별도로, 과학기술 공유지는 원리적으로 비경합적인 공유지이지만 주로 사회역사적으로 불특정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공동생산된 것이기에 누구나 과학기술의 생산에 호혜적으로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마지막 기여자가 사적으로 해당과학기술의 성과를 독점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착취의 핵심요소를 기술 착취로 보는 판 빠레이스의 착취론에 따를 때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착취라고 할 수 있다(Van Parijs, Real Freedom for All, p. 174). 그러므로 이 착취 부분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환수하여 모두가 1/N로 나누는 것이 직접적인 노동대가 형태로 호혜성을 담보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판 빠레이스의 공정성과 사회정의 개념에 합치된다.

구소,『도시인문학연구』9-1, 2017, pp. 205-224.
권정임,「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철학』27-4, 2016, pp. 29-70.
_____,「실질적 자유지상주의 분배정의의 세 원칙과 공유사회」, 한국철학사상연구회,『시대와 철학』28-1, 2017, pp. 7-42.
남기업,「그 많은 토지 불로소득은 누가 가져갔나」,『오마이뉴스』, 2017.4.20.
이명현,「시민권과 기본소득: 호혜성 원리 중심의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사회보장연구』26-4, 2010, pp. 433-457.
조남경,「기본소득 (전략)비판: 호혜성, 근로윤리, 그리고 권리와 통제」, 한국사회보장학회,『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17, pp. 275-289.
조현진,「호혜성에 근거한 기본소득 비판에 대한 반론과 한국 사회에서의 그 함축」,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통일인문학』62, 2015, pp. 367-406.

2. 단행본

네그리・하트 지음, 정남영・윤영광 옮김,『공통체』, 사월의책, 2014.
로버트 스키델스키・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지음, 김병화 옮김,『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부・키, 2013.
롤스 지음(1999), 황경식 옮김,『정의론』, 이학사, 2013.
볼리어 지음, 배수현 옮김,『공유인으로 사고하라』, 갈무리, 2015.
액커만・앨스톳・판 빠레이스, 너른복지연구모임 옮김,『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히적 지분급여』, 나눔의 집, 2010.
하승수,『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한티재, 2015.
Fitzpatric, T., *Freedom and Security*,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999.
Füllsack, M., *Leben ohne zu arbeiten? – Zur Sozialtheorie des Grundeinkommens*, Berlin: Avinus Verlag, 2002.
Goodin, R., "Something for Nothing?", In J. Cohen et al. (Eds.), *What's Wrong with a Free Lunch?*, Boston: Beacon Press, 2000, pp. 90-97.
Gorz, A., *Arbeit zwischen Misere und Utopie*, Frankfurt am Main: Suhrkamp Verlag, 2000.
Howard, M. W., "Basic Income, Liberal Neutirality, Socialism, and Work", In K. Widerquist et al. (Eds.),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Burlington: Ashgate, 2005, pp. 122-137.

Marx, K., “Kritik der Gothaer Programms”, In *Marx Engels Werke 19*, Berlin: Dietz Verlag, 1982.
Rawls, J., E. Kelly (Eds.), *Justice as Fairness*, Cambridge: Harvard, 2001.
Sundararajan, A., *The Sharing Economy*, Cambridge-MA: The MIT Press. 2016.
Van Donselaar, G., *The Right to Exploit: Parasitism, Scarcity, Basic Incom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Van Parijs. Ph., “A capitalist road to communism”, *Marxism recycl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Van Parijs. Ph., *Real Freedom for All*,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Van Parijs. Ph., “Basic Income and Social Justice. Why Philosophers disagree”, revised and unpublished, 2010.
Van Parijs. Ph. / Vanderborght, Y., *Ein Grundeinkommen für alle?*, Frankfurt am Main: Campus Verlag, 2005.
Van Parijs. Ph. / Vanderborght, Y., *Basic Income: A Radical Proposal for a Free Society and a Sane Econom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Widerquist, K., “Does She Exploit or Doesn’t She?”, In K. Widerquist et al. (Eds.), *The Ethics and Economics of the Basic Income Guarantee*, 2005, pp. 138-149.
_____, “Reciprocity and the Guaranteed Income”, In K. Widerquist et al. (Eds.), *Basic Income: An Anthology of Contemporary Research*, 2013, pp. 123-133.

(**투고일**: 2017. 6. 30 **심사완료일**: 2017. 8. 15 **게재확정일**: 2017. 8. 16)

이름: 곽노완
소속: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HK교수
주소: 서울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창공관 328-1호실 (도시인문학연구소)
전화번호: 010-5571-2050
전자우편: kwacks79@hanmail.net

[Abstract]

Reconstruction of Van Parijs' Conception of Social Justice and Exploitation

Kwack, No-Wan

Van Parijs has expanded the conception of exploitation that has been established through the critical reconstruction of the Roamer. Recently, he has reduced the scope of the employment rent and has included the unearned income of capital and land, the return of natural resources, and gambling profit to the source of basic income. This reorganizes the social justice and basic income models that included the concept of exploitation by labor. Nonetheless, it appears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prospect of basic income from noncompetitive and open commons, such as Big Data, jointly produced by a large number of people connected to the Internet with his conceptions of exploitation and social justice. In this way, if his concept of social justice is linked with the concept of common that all of them produce together, he can construct a new social economic paradigm in which the combination of labor income + basic income (common dividend) can leximin the real freedom.

Key words: reciprocity, fairness, social justice, exploitation, basic income, commons